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37

발의연월일: 2025. 3. 4.

발 의 자:이건태·조인철·부승찬

양문석 • 김현정 • 문진석

김문수・김기표・정준호

김승원 · 정진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립·사립학교의 경우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등을 개방하여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체육활동 등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 수요는 높은 반면, 학교는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학교시설 훼손 등에 대한 우려로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를 학교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공사 정비 등으로 이용자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등의 상황으로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

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하여 책임보험 가입 등 사고 예방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 청에 따라 학교시설을 개방한 경우에는 개방·이용 중 발생한 사고 및 시설 등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학교시 설 등의 개방 및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 및 제11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학교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원활히 학교시설을 이용하도록 교육감 등 학교시설 관리 주체에게 학교시설 개방·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 등의 개방・이용과 관련하여 책임보험 가입 등 사고 예방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 등의 개방·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면책)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학교시설을 개방한 경우에는

개방ㆍ이용 중 발생한 사고 및 시설 등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u>①</u> -
국민은 <u>학교교육</u> 에 지장을 주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u>에 따라 학교교육</u>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	
·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u><신 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이 원활히 학교시설을 이용하도
	록 교육감 등 학교시설 관리 주
	체에게 학교시설 개방ㆍ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u><신 설></u>	③ 제2항의 경우에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학교시설 등의 개방
	•이용과 관련하여 책임보험 가
	입 등 사고 예방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u><신 설></u>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시설 등의 개방·이용과 관련하
	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u><신 설></u>	제11조의2(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면책)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

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 청에 따라 학교시설을 개방한 경우에는 개방・이용 중 발생한 사고 및 시설 등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택임을 지지 아니한다. 해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현 행 제11조의2와 같음)